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1조(입소의 제한)

시설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입소자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2. 기타 다른 입소자 및 직원에게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입소자

제42조(입소 정원)

입소정원은 매화점,목련점,동백점 각 9인으로 한다.

제43조(모집 방법)

- ① 유관기관 연계협력,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으로 모집한다.
- ② 주변 지인 등의 추천이나 소개로 모집한다.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44조(계약 기간)

입소 계약 기간은 입소계약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의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장기요양급여비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입소가능 등급판정이 결정 된 경우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 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6조(입소절차)

- 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그 보호자는 입소에 관한 상담 후 심사하여 입소가 결정되면 시설과 입소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 입소대상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과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 ②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 ③ 시설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 ④ 구비서류 및 물품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3) 건강진단서(전염성 유무질환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 (4) 신체구속 동의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 (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CCTV 관련 동의서
 - (6)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7)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예:처방정, 의사소견서 등)
 - (8) 개인물품 등(개인물품에는 수급자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제47조(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월이용료 입소비용 :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에 의하고, 비급여 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소비용을 결정한다.
- ② 기타 비용부담
 - 1) 비급여(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별표 1]
 - 2)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기타비용의 부담은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와 그 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 1)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 3)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와의 면회 및 외박·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보호자)의 필요한 의한 자유로운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6)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 7) 수급자가 건강한 시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
-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 2)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 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시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시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설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분을 매월 선납 수납한다.
 - 10)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 11) 신원 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12) 장기출장 등으로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49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급여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 ① 급여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②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2)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50조(계약의 해제)

-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 2)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3)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판단된 경우
 - 4) 입소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경우
 - 5)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6) 입소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 7) 입소자가 병원 장기입원일이 1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 8) 건물, 부대시설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 9)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판단한 경우
 -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11) 입소자(보호자)의 해제 통지나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 12)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1조(계약의 갱신)

계약이 만료 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 발생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날까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계약의 갱신으로 같음한다.

제52조(퇴소)

- ①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시설장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단, 강제퇴소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으로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5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 1)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신원인수인(주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SNS를 활용하여 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 2) 이용료 변경 시 변경절차에 따른다.
- ② 변경절차
 - 1) 인정 기간 만료, 갱신 시 : 재계약 원칙
 - 2) 매년 수가 변동 시 : 수급자(보호자)에게 SNS로 이용료 및 비용 통보
(재계약서 작성 생략)
- ③ 납부방법 : 시설계좌입금, 카드납부

[별표 1]

비급여 항목 내역서

구 분	28 일	30 일	31 일
식 비	3,500원*3회*28일 = 294,000원	3,500원*3회*30일 = 315,000원	3,500원*3회*31일 = 325,500원
간식비	1,000원*1회*28일 = 28,000원	1,000원*1회*30일 = 30,000원	1,000원*1회*31일 = 31,000원
상급침실료	없음	없음	없음
이미용비	자체적으로 해결 함		
기 타	병원진료비 및 개인적인 기타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 함		